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경주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2. 10. 12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 · 직원	징계면직 : 1명, 감봉 : 1명, 견책 : 2명, 경고 : 1명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사실

○ 무자원 입금 및 시재금 횡령

- 4급 김○○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11,000천원을 본인 명의 농협계좌에 무자원으로 입금하여 횡령하였고 당일 또는 수일 경과 후 현금시재액을 충당하여 시재를 일치시켜 놓았으며, 금고에 있는 시재 7,000천원을 횡령한 후 본인 통장에서 인출로 처리하여 시재를 일치시켜 놓음.
- 또한, 현금시재통을 현금보관고에 넣으면서 현금 5,000천원을 횡령한 후 시재 불시점검을 하게 되자 평소에 자동화기기는 시재검사를 자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, 자동화기기로 5,000천원을 전산으로 인도등록하여 시재 5,000천원 횡령 사실을 은폐하였으며, 이후 본인 휴가 중에 동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일찍 출근하여 시재금고에 현금 5,000천원을 채워 넣는 등 총 7회에 걸쳐 23,000천원을 횡령함.

○ 내부통제 부적정

- 1급 김○○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시재를 조사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, 매월 2회 실시하여야하는 현금시재액 불시점검을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3급 최○○에게 검사토록 지시하였으며, 현금보관고의 열쇠 및 암호관리도 소홀히하여 횡령사고 발생을 초래함.
- 3급 최○○은 시재조사 시 현금보관고의 시재액만 확인하고 자동화기기 시재는 조사하지 않는 등 시재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, 4급 박○○은 금고관리자로서 금고실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자가 모든 열쇠를 보관 및 관리하도록 방치하였음.

○ 신용사업 관리업무 소홀

- 상임이사 최○○은 총괄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및 감독업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조합 감사실에서 회원조합 내부통제 철저를 위해 수차례 지도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형식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 감독 등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, 사고예방을 위한 인력운용에 책무를 다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지점의 횡령사고를 초래한 책임이 있음.

〈 관련법규 〉

1.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,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
2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장 제47조(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)
3. 「경주시수협 정관」 제52조(임원의 직무)
4. 「경주시수협직제규약」 제10조(임원의 직무)
5. 「복무규정」 제3조(법규의 준수), 제4조(성실과 공정)
6. 「인사규정」 제32조(검직 및 직무대행)
7. 「상호금융 예탁금업무방법」 제1편 제42조(직원의 금지사항)
8. 「상호금융 출납업무방법」 제6조(금고관리자 지정 및 금고암호·열쇠관리), 제19조(현금검사)